#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
# 집합 · 모임 · 행사 집합금지 조치

## 1 적용 지역

○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·도

-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

## 2 적용 대상

○ **(대상)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**이 대면으로 모이는 **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**

- 이때 집합·모임·행사란 **동일 목적**을 가진 사람들이 **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**에 따라 **동일한 장소**에 모여서 진행하는 **일시적인**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

**< 실내 50인 이상 /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>**

▲ **(행사)** 전시회, 박람회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싸인회, 강연 등

▲ **(사적 모임)** 결혼식,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회갑연, 장례식, 동호회, 돌잔치, 워크샵, 계모임 등

▲ **(각종 시험)**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(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)

○ **(인원 기준)** 원칙적으로 집합·모임·행사의 **총 규모를 기준**으로 **집합금지 조치를 시행**하되,

- **공간**이 **분할**되어 있고, 공간 간 **이동·접촉이 불가**한 경우 **분할된 공간***(예: 교실) **내 인원을 기준**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, 다만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의 **방역수칙 철저 준수**

*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·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

**< 사 례 >**

- ▲학교 건물에서 채용시험을 치르는 경우, 서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 간 접촉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교실별 응시인원이 50인 이내면 허용
- ▲전체 참석자가 80명인 회의의 경우, 20명씩 나누어 서로 다른 회의실을 사용하고 영상 회의로 연결하는 경우 허용

○ **(예외) 정부·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, 긴급성 등*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,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**

*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

## 3 적용 기간

○ **2020년 8월 23일(수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**
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
## 4 법적 근거

○ **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**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

* **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**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**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**을 **제한**하거나 **금지**'

## 5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집합·금지·행사에 대한 **집합금지*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**집합금지 조치**)

⇩

② (지자체) 관내 **행정조치** 실시, 집합금지 조치 **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위반 시 **고발 조치**, 확진자 발생 시 **손해배상 청구**

o **적용 대상 집합·모임·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**

-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·모임·행사의 경우 **실내 50인 미만,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**

-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**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부 관리,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** 등 **핵심 방역수칙 준수**

  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·모임·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**수칙 준수**

o **지자체장의 조치사항**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여부 **현장점검** → **위반 시 벌칙 부과** 등 조치

- 관내 집합·모임·행사에 대한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

-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집합·모임·행사의 범위, 인원 기준, 예외, 개최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이행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**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